

신구조문대비표 (변경의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신구문 대조표

변경 전	변경 후
<p><신설> <foundation></p>	<p><u>제4조의2 대출계약의 철회</u> ① 채무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관련 대출계약에 대한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u>Article 4-2 Withdrawal of loan agreement</u> ① <u>The Obligor may withdraw loan agreement entered into with the Bank pursuant to Article 46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and relevant regulations. In case the Obligor, who is entitled to withdraw loan agreement entered into with the Bank pursuant to Item (1) of this Article, requests full repayment of loan, the Bank would handle such request verifying the Obligor's intent to withdraw relevant loan agreement.</u></p>
<p><신설> <foundation></p>	<p><u>제4조의3 위법계약의 해지</u> 채무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이 정하는 해지권 행사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u>Article 4-3 Termination of the Transaction Violating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u> <u>In case the Obligor has entered into such transaction that is a cause of the right to terminate the transaction provided in Item (1), Article 47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the Obligor may request the termination of the transaction pursuant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thereof.</u></p>

제22조 약관, 부속약관 변경

①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Article 22. Amendment to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 Other Supplemental Terms and Conditions

①If the Bank intends to amend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r any supplement thereof in disadvantage of the Obligor, the Bank shall post such amendment in the offices or the internet website of the Bank for one (1) month before the proposed amendment goes into effect.

<신설>

<foundation>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약관, 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간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내용이 변경 전보다 기존 채무자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채무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Article 22. Amendment to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 Other Supplemental Terms and Conditions

① If the Bank intends to amend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r any supplement thereof in disadvantage of the Obligor, the Bank shall post such amendment in the offices or the internet website of the Bank for one (1) month before the proposed amendment goes into effect. Provided that, in case of the following, the Bank will post such amendment for seven (7) days from the date of the amendment

1. The amendment is made due to the change or enactment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2. The amendment is not applicable to the

existing Obligors, or, is more favorable to the existing Obligors than the existing provision subject to the amendment

3. The amendment is merely a simple change of the language and therefore does not entail substantial changes on the contents of thi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② If the proposed amendment pursuant to Paragraph 1 above is in disadvantage of the Obligor, the Bank shall notify the Obligor separately in writing or such other manner as previously agreed with the Obligor by at least thirty (30) days prior to such amendment; provided, that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where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r any supplement thereof before the amendment are still applicable to the existing Obligor or the Obligor expressly waived his/her right of receiving notice of such amendment.

③ If the Bank makes a notice pursuant to Paragraph 2 above, it shall notify the Obligor of the following: “if the Obligor does not consent to this amendment, the Obligor may terminate the contract within thirty (30) days from receiving the notice, and if the Obligor does not indicate his/her intent to terminate the contract, the Obligor will be deemed to have consented to the proposed amendment.”

④ If the Obligor does not indicate his/her intent to terminate the contract within thirty (30) days from receiving the notice pursuant to Paragraph 3 above, the Obligor will be deemed to have consented to the proposed amendment.

The Bank shall keep or post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in its business offices and provide a copy upon request from the Obligor.